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	3.
개 정	2010.	6.
개 정	2012.	3.
개 정	2012.	7.
개 정	2012.	12.
개 정	2015.	2.
개 정	2016.	2.
개 정	2017.	8.
개 정	2018.	2.
개 정	2018.	6.
개 정	2019.	5.
개 정	2019.	6.
개 정	2020.	2.
개 정	2021.	10.
개 정	2022.	01.
개 정	2023.	09.
개 정	2023.	12.
개 정	2025.	2.
개 정	2025.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졸업사정 대상의 선정)(신설2016.02.01.)①교무처 및 학부(과)에서는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졸업사정 대상자를 확정하고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한다.

②제1항에서 말한 졸업사정 대상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졸업사정대상자 확정일 현재 4학년 재학생으로 학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충족 자.
2. 규정 제21조 제4호에 따른 수료자 중 졸업사정대상자 확정일 현재 졸업종합시험 응시원서 제출 자.

③(삭제 2019.05.08)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9조에 따른 조기졸업 신청자는 조기졸업관련 규정에 따라 그 대상자를 정한다.

⑤기타 졸업사정 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5.08)

제2장 졸업종합시험

제2조 (시험관리총괄) 졸업종합시험은 교무처에서 총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2.18.)

1. 졸업종합시험의 기본계획 수립
2. 평가기준, 방법, 결과처리 등 주요사항의 결정

제3조 (학부별 시험관리) 졸업종합시험의 학부별 시험 관리는 학부단위 평가위원이 담당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졸업종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2.18.)

제4조 (소위원회) 총장은 본 대학 교직원 및 시간강사 중에서 출제위원, 시험감독위원,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여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실시시기) ①기본계획은 전년도 5월 및 11월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학사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시험은 연 2회(5월과 11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횟수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격 및 제한) ①(삭제 2025.2.18.)

② <삭제 2012.7.1>

③졸업종합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다음 1회에 한하여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과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절차) ①학부장은 졸업종합시험 응시자 명단을 시험실시일 20일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 수료자로서 졸업종합시험에 재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위 기간에 해당학부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학생으로 처음 응시하는 자에게는 수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재 응시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험과목) ①졸업종합시험의 과목은 전공교과목으로 한다.

②전공과목의 범위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시험, 논문, 실험, 실습, 실기, 자격증취득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6.02.01.)

③학부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사1급 이상 등)을 갖춘 자는 전공교과목의 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의 2 (World Student 인증제) ①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교양과목 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2023.09.20.)

1. 토익 550점 이상 취득자(단, 간호학과는 650점, 철도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외식조리학과는 600점으로 한다)
2. JLPT N3급 이상 취득자
3. HSK 5급 이상 취득자
4. 기타별도 지침에 의하여 위 각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자.

②World Student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별도의 이수과정을 거쳐 이수로 인정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입학생 중 복수학위 취득자 및 전공과목 수업 대부분을 외국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소속 학생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16.02.01.)(개정 2025.11.14.)

④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의 경우에는 교양과목 합격 기준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자로 한다.(신설2016.02.01.)

제9조 (시험점수 배점) 졸업종합시험의 전공교과목의 점수는 100점으로 한다.

제10조 (교양교과목의 출제형식 및 수준) 삭제 (2012.7.1)

제11조 (합격기준) ① 삭제 (2012.7.1)

②전공교과목은 졸업논문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2025.2.18.)

③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합격은 계속 유효하다.

④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교과별 합격인정 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교과 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학부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졸업논문 등의 계획서 제출) (삭제 2025.2.18.)

제13조 (졸업논문 등의 지도교수 선정) 졸업논문 등의 지도교수는 학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접수한 학기 초에 위촉하며, 동 지도교수는 졸업논문 등의 전 과정을 지도한다.

제14조 (졸업논문 등의 작성 및 제출) ①졸업논문 등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서로 논문작성법에 의거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학부에 제출한다. 다만, 실기발표의 경우에는 해당 작품과 작품을 제작한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학부에서는 졸업논문 등의 제출 전에 발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발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졸업논문 등은 최종학기 기준으로 11월말(전기), 5월말(후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졸업논문 등의 심사위원회 구성) 졸업논문 등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임 및 외래교수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16조 (졸업논문 등의 심사와 평가) 졸업논문 등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학부에서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졸업종합시험 등의 관리수당) 졸업종합시험 등의 시험 관리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험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사항)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성적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졸업 및 학위수여

제19조 (졸업에 필요한 요건)(제목개정 2025.2.18.) ①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2.18.)

1. 학칙 제8조 및 본 규정 제1조의2에 따른 수업연한
2. 학칙 제29조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 이상 취득
3. 학칙 제30조의2에 따른 다전공 의무이수 조건
4.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에서 [별표 1]에 의한 최소 이수학점 기준
5. World Student 인증 및 영역 이수학점에 대한 교양 졸업기준
6. 졸업종합시험 및 영역 이수학점에 대한 학과(전공) 졸업기준

②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2.18.)

③솔브릿지경영학부 및 복수학위과정 이수자 등은 교육과정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개정 2016.02.01., 개정 2017.08.28.)

④(삭제 2025.2.18.)

⑤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설학과(전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과목을 주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02.08.)(개정 2025.2.18.)

⑥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29조제3항의 근거에 따라 2학년 이상 편입생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본교와 교육협약에 따라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3학년 편입학생은 최대 3학점까지 본교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외식조리학부, 글로벌조리학부는 이공·예체능계열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8.06.29.)(개정 2025.2.18.)(개정 2025.11.14.)

편입 학년	인문·사회계열	이공·예체능계열
2학년	90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3학년	60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4학년	30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⑦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과목의 이수구분과 상관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양, 전공, 다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06.29.)(개정 2025.2.18.)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에 의하여 취득한 특별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 (개정 2025.2.18.)
2. 인턴십 운영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인턴십과정으로 이수한 학점
3.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
4.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및 복수학위 과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

⑧제7항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이수인정의 범위는 취득 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에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 내로 한다.(신설 2018.06.29.)

⑨글로벌조리학부 Lyfe조리전공(구 폴보퀴즈조리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52학점으로 하며, 외식조리학부, 글로벌조리학부(Lyfe조리전공 제외), 외식조리영양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으로 한다.(신설 2020.02.06.)(개정 2025.2.18.)(개정 2025.11.14.)

⑩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2.18.)

제19조의2 (특별교육과정의 학점 인정)(제목개정 2025.2.18.)①(삭제 2025.2.18.)

②(삭제 2025.2.18.)

③(삭제 2025.2.18.)

④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특별교육과정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 전공, 다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의 학점으로 이수 인정하며, 이를 졸업사정에 반영한다. 다만, 성적표기 과목명은 이수한 과정의 과정명 또는 이수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표기한다.(개정 2015.03.02., 2025.2.18.)

⑤과정별 이수자가 이수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포기한 과정에 대한 학점은 F로 처리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제4항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이수 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5.03.02.)(개정2016.02.01., 2025.2.18.)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제2항 내지 제3항 이외 학생의 이수구분별 이수인정의 범위는 제19조제8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05.08., 2025.2.18.)
2.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구분별 이수인정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다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인정 학년 및 학기는 2학년 1학기부터로 한다.(개정 2019.05.08., 2025.2.18.)
3. (삭제 2025.2.18.)
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은 2015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며, 동 학년·학기로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0조 (교과목 이수 및 교육과정) ① 삭제(2012.7.1.)

②편입학생에게 지정된 선이수 기초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의 적용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다.

제20조의2 (다전공 의무이수)(제목개정 2025.2.18.)①학칙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2010학년도 이후 신입 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다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2016.02.01., 2025.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3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23., 2016.02.01., 2023.12.11., 2025.2.18.)

1. 학생군사교육단 소속 학생
2.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3. 휴먼디지털인터페이스학부 소속 학생

③제2항 각 호의 과정을 포기하거나 탈락 또는 소속을 변경할 경우 졸업 전까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개정 2025.2.18.)

④마이크로디그리 2개 과정(18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25.2.18.)

제21조 (학년별 수료)①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년별 수료 기준은 학칙 제4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4학년 수료는 제19조제1항의 졸업요건 중 World Student 인증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개정 2016.02.01., 2019.05.08., 2025.2.18.)(개정 2025.11.14.)

수료기준학년	졸업에 필요한 학점	
	120학점	126학점
1학년	30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2학년	60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3학년	90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4학년	120학점 이상	126학점 이상

②(삭제 2016.02.01.)

③(삭제 2016.02.01.)

④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2016.02.01.개정 부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2019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2025.2.18.개정 부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및 학과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년별 수료학점의 기준을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02.06.)(개정 2025.2.18.)

제22조 (학위수여) ①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1.50 이상인 자에게 졸업증서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2016.02.01.)

②학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그 과정명을 주전공과 함께 학위증에 표기하여 수여한다.(개정2016.02.01.)

③학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다전공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외 별도의 학위증을 수여한다.(개정 2016.02.01.)

제23조 (기타사항) 졸업 및 수료와 학위수여에 관하여 학칙과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2학년도 전기(2013년 2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본 규정 시행에 따른 재학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졸업종합(교양)시험 응시자가 있을 경우 2013학년도까지는 기존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졸업의 자격으로 활용하며, 2014학년도 이후부터는 World Student인증제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2015년 8월 이전에 졸업하는 재학생에 대해서는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표’ 또는 ‘졸업시기별 이수학

점표(경과조치)'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③본 규정 시행 전에 졸업유예 중인 학생은 기존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료기준) ①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9.05.08)

1.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 취득학점 38학점 이상 76학점 이하

나. 2학년 : 취득학점 77학점 이상 109학점 이하

다. 3학년 : 취득학점 110학점 이상 141학점 이하

라. 4학년 : 취득학점 142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2. 2015학년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38학점 이상 76학점 이하 취득 자

나. 2학년: 77학점 이상 109학점 이하 취득 자

다. 3학년: 110학점 이상 147학점 이하 취득 자(개정 2017.08.28.)

라. 4학년: 취득학점 148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3.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38학점 이상 76학점 이하 취득 자

나. 2학년: 77학점 이상 114학점 이하 취득 자

다. 3학년: 115학점 이상 153학점 이하 취득 자(개정 2017.08.28.)

라. 4학년: 취득학점 154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4.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35학점 이상 69학점 이하 취득 자

나. 2학년: 70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 자

다. 3학년: 105학점 이상 139학점 이하 취득 자(개정 2017.08.28.)

라. 4학년: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제3조 (이수학점 기준) ①입학 년도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1」의 경과조치로 한다.(개정 2017.08.28.)(개정 2018.06.29)

1. 삭제(개정 2018.06.29)

2. 삭제(개정 2018.06.29)

3. 삭제(개정 2018.06.29)

②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필수학점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양선택 이수 여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2항의 사항은 2015년 8월 이전 졸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신설 2018.06.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2018.02.0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일) 이 규정의 적용은 2019.3.1.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특례) 제1조의2제2항1호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신입학 한 학생의 수업연한 충족기준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1·2학기 과정 총 7개 학기이상 및 여름·겨울학기 과정 총 6개 학기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한자.
2. 1·2학기 과정 총 8개 학기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한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별표1의 표2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삭제 2025.2.1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제19조제6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 제1호 <표2>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별표1]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①제19조제6항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전기 졸업사정(2024.2월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1] 제2호 <표4 일반학과 교양 영역필수> 영역명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1. '의사소통능력 국제어문해' 영역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의사소통능력' 영역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의사소통능력 정보문해' 영역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SW기초.심화' 영역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3. '글로벌마인드' 영역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글로벌마인드' 영역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19조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료기준) 2019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입학생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학년 : 취득학점 34학점 이상 67학점 이하
2. 제2학년 : 취득학점 68학점 이상 101학점 이하
3. 제3학년 :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 131학점 이하
4. 제4학년 : 취득학점 132학점 이상이고 제19조제1항의 졸업요건 중 World Student 인증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 학년도 입학생별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전부개정 2025.2.18.)(개정 2025.11.14.)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표 1> 신입생의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신입학 학년도 및 이수구분		2026학년도 이후	
		교양	전공
일반학과	인문·사회계열	31	59
	이공·예체능계열	34	62
간호학과		20	88
작업치료학과		20	82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20	82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0	65
유아교육과		18	59
글로벌조리학부 Lyfe조리전공		30	82
외식조리학부, 글로벌조리학부(Lyfe조리전공 제외)		34	62
휴먼디지털인터페이스학부		30	62

신입학 학년도 및 이수구분	2025학년도		2023~2024학년도		2022학년도		2020~2021학년도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일반학과	34	62	37	65	37	65	37	65
간호학과	20	88	25	89	22	85	22	85
작업치료학과	20	82	20	85	20	85	22	85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20	82	19	85	16	85	22	85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0	65	26	65	37	65	37	65
유아교육과	18	59	18	62	18	62	18	62
글로벌조리학부 Lyfe조리전공	30	82	30	82	25	82	43	82
휴먼디지털인터페이스학부	30	62	30	65	30	65	-	-

<표 2> 편입생의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편입시기	편입학 학년도 및 이수구분	2025학년도 이후		2024학년도 이전	
		교양	전공	교양	전공
2학년 편입		10	50	12	50
3학년 편입		-	40	-	42
4학년 편입		-	20	-	21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표 1> 신입생의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학과	신입학 학년도 및 이수구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6~2017학년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이전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일반학과	37	65	37	75	37	63	32	63	30	63		
간호학과	22	75	37	75	37	68	26	68	30	68		
작업치료학과	16	85	16	75	16	63	23	63	20	63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22	85	37	75	37	63	32	63	30	63		
유아교육과	18	62	22	66	22	63	22	63	30	63		

<표 2> 편입생의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편입시기	편입학 학년도 및 이수구분	2019학년도 이전	
		교양	전공
2학년 편입		12	50
3학년 편입		-	42
4학년 편입		-	21